

<p>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금운영관: 보건복지국장</li> <li>2. 분입기금운영관: 노인복지과장, 장애인복지과장, 청소년과장</li> <li>3. 기금출납원: 분입기금운영관이 지정하는 사무관</li> </ol> <p>②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영관에게,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.</p> <p>제13조(기금운영계획 등)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 1 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 2 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,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,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.</p> <p>제 3 조(노인복지기금등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·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 및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·채무 기타의 권리·의무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.</p> <p>②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·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 및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설치운용조례에 의한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</p> <hr style="border-top: 1px dotted black;"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98년 12월 문교보사위원회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심사경과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1998년 12월 8일, 서울특별시장</li> <li>나. 회부일자: 1998년 12월 10일</li> <li>다. 상정 및 의결일자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제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7차 문교보사위원회('98.12.23) 상정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원안가결</li> </ul> </li> </ol> </li> <li>2. 제안설명요지(문화관광국장 김우석)             <p>우리 시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·육성하고,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려는 것임.</p> </li> <li>3. 주요골자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위원회의 기능: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장자문(안 제2조)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1) 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·단기 시책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</li> <li>(2)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</li> <li>(3)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객 맞이 준비에 관한 사항</li> <li>(4)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</li> </ol> </li> <li>나. 위원회의 구성: 위촉위원을 위원의 과반으로 구성(안 제3조)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1) 위원: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내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위원장 및 부위원장: 위원 중에서 호선</li> <li>○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관계공무원</li> <li>-기타 관광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</li> </ul> </li> <li>(2) 간사: 문화관광국 관광과장</li> </ul> </li> </ol> </li> </ol> </li> </ol> <p>다. 위원의 임기: 2년 연임가능(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)</p> <li>4. 참고사항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관련법령: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(자문기관의 설치)</li> <li>나. 예산조치: '99년도 예산에 반영 예정(400만원)</li> <li>다. 합 의: 필요 없음.</li> </ol> </li> <li>5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윤병국)</li>
--	--

□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임.

○먼저 제1조는 시의 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 육성하고,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며,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열거하고 있음.

○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은 관계공무원, 관광관련기관·단체 및 업체관계자, 기타 관광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으며, 위원의 임기는 관계공무원의 경우 해당직에 재임 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하였음.

그러나 위원 구성(참고자료)에서 보듯이 문화관광부의 관광기획과장은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위촉 대상이라는 점이 문제로 남게 됨. 왜냐 하면 문화관광부의 관광기획과장을 위원으로 두는 것은 국가의 관광정책과 시의 관광정책간 연계성 및 보완성을 염두에 둔 경우라 할 것인바, 위촉직이라는 이유로 임기 2년을 고수하게 되면 현재의 관광기획과장이 문화관광부의 타 보직으로 변경되더라도 위원직을 유지하게 되어 중앙정부와 관광정책의 연계성 내지 보완성 확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.

○따라서 문화관광부의 관광기획과장은 위촉직임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전반부의 규정을 근거로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을 위원의 임기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○제5조는 위원장에 관한 규정을,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토록 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 제7조는 수당에 관한 규정을, 그리고 제8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.

○마지막으로 부칙 제2항에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위원회의

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는바, 이는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:없음.

7. 심사결과

원안가결(재적 16인, 재석 16인, 전원일치)

8. 소수의견 요지: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:없음.

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·육성하고,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기능)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,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.

1. 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·단기 시책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
3.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객 맞이 준비에 관한 사항
4.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 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을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.

1. 관계공무원
2. 관광관련기관, 단체 및 업체 관계 인사
3. 기타 관광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

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문화관광국 관광과장이 된다.